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
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공무원 임용 시 예외없이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들 중에서 임용하도록 한 현행 규정예외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임용권자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한편, 기타 인사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10. . ~ 11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”을 “임용기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”을 “총임용기간”으로 한다.

제1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1조제2항 후단 중 “공고 내용”을 “공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조(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7조(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제9조(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) ① (생략)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<u>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u> 다만,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<u>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.</u>	제9조(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임용기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총임용기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17조(공모직위의 임용절차) ①	제17조(공모직위의 임용절차) ①

<신 설>

②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(필요한 경우 일간신문, 관보, 공보 및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)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2조를 준용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

공 고

- 5 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0